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8710 농어촌특별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2.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환급세액란 기재 각 해당 농어촌특별세의 감액경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가. 원고는 2012. 10. 23. 주식회사 [redacte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과세대상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의 특정란을 인용할 때에는 별지 목록의 표시 없이 곧바로 해당란을 지칭한다)을 포함한 총 95개 부동산(이하 통틀어 '현물출자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받고, 소외 법인이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현물출자 가액을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경일, 대일)의 시가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인 2,020,900,638,673원(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현물출자 대가로 감정평가액에서 위 임대차와 관련한 52,089,662,673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무액을 공제한 1,968,810,976,000원(2,020,900,638,673원 - 52,089,662,673원)에 상당하는 기명식 보통주 9,84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1주당 발행가 199,980.8원, 총 발행가액 합계 1,968,810,976,000원)를 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A는 2012. 10. 25. 원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상사비송 법원'이라 한다)에 상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한 신주발행조사신청서(이하 '현물출자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상사비송 법원은 2012. 11. 28. 현물출자보고서를 그대로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 소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소외 법인에게 위 주식을 발행한 다음 원고의 장부에 현물출자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소외 법인의 장부에 현물출자 부동산의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던 금액인 925,543,426,000원을 그대로 이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라. 한편, 원고는 그 무렵 구 농어촌특별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라 한다)의 과세권자인 피고들에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위 과세표준과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세액이 순차로 '당초신고 취득세 과세표준'란, '당초신고 농특세'란 기재 각 금액이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14. 8.부터 2014. 9.까지 피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장부가액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경정청구 농어촌특별세'란 기재 각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위 신고 · 납부한 세액에서 '경정청구 농어촌특별세'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경정청구 환급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감액경정을 신청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을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9호증, 을라 제1 내지 7호증, 을마 제1 내지 11호증, 을바 제1 내지 7호증, 을사 제1 내지 5호증, 을아 제1 내지 7호증, 을자 제1 내지 7호증, 을차 제1 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지 5호증, 을카 제1 내지 4호증, 을타 제1 내지 6호증, 을파 제1 내지 3호증, 을하 제1 내지 7호증, 을거 제1 내지 4호증, 을러 제1 내지 3호증, 을버 제1 내지 5호증, 을서 제1호증, 을저 제1호증, 을처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인장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기한 것은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원고의 100% 주주였으므로 이와 같이 100% 모회사가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공신력 있는 법인으로서 장부가액을 조작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7322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법인에게 부여할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한 점, ② 상법 제416조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은 주식회사가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현물출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20,900,638,673원에 달하나, 장부가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25,543,426,00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역시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상사비송 법원이 위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감정평가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이 아니라 이 사건 장부가액으로 보았다면,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현물출자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여 과다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외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장부에 그대로 이기하였고 그와 같은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소외 법인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재해 둔 것일 뿐이어서 이를 곧바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감정평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장부가액이 위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장부가액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별지.

피고들 명단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5. [redacted]시 [redacted]청장
6. [redacted]시 [redacted]청장
7. [redacted]시 [redacted]청장
8.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9.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0.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4. [redacted]시장
1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7. [redacted]시장
18. [redacted]시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19. [redacted]시장

20.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2. [redacted]시장

23. [redacted]군수

24. [redacted]군수

(명단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목록

NO	관할지자체	과세대상	보조신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일
			취득세과세표준	농특세	취득세과세표준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20	66,218,486,672	529,747,890	41,910,432,557	335,283,460	194,464,430	2014.10.16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1-1	31,450,485,917	251,603,880	8,354,974,105	66,839,790	184,764,090	2014.10.20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3	72,822,027,126	582,576,200	42,315,122,936	338,520,980	244,055,220	2014.10.03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7-6 외	17,401,189,627	139,209,510	8,068,024,083	64,544,190	74,665,320	2014.09.26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5-1 외	44,097,804,391	352,782,430	7,265,357,750	58,122,860	294,659,570	2014.11.06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외	145,811,727,539	1,166,493,820	133,116,012,519	1,064,928,100	101,565,720	2014.11.06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35-1	37,304,590,382	298,436,720	4,675,935,793	37,407,480	261,029,240	2014.11.06
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58-5 외	47,261,745,414	378,093,960	9,192,642,766	73,541,140	304,552,820	2014.10.28
9	서울특별시 중구	충인동 86 외	41,550,498,579	332,403,980	4,704,897,617	37,639,180	294,764,800	2014.10.29
1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0-3	7,674,202,930	61,393,610	4,035,842,739	32,286,740	29,106,870	2014.08.11
11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0	133,530,167,133	1,068,241,330	66,618,714,652	532,949,710	535,291,620	2014.09.17
12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9-1	47,474,273,506	379,794,180	10,052,999,125	80,423,990	299,370,190	2014.10.21
13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7	15,257,861,585	122,062,890	8,556,831,115	68,454,640	53,608,250	2014.10.21
14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4 외	25,587,380,814	204,699,040	5,418,487,376	43,347,890	161,351,150	2014.10.30
15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0	6,016,948,369	48,135,580	5,763,634,195	46,109,070	2,026,510	2014.10.30
16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7	9,198,204,280	73,585,630	3,541,184,400	28,329,470	45,256,160	2014.12.10
17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1	33,533,460,598	268,267,680	15,314,703,978	122,517,630	145,750,050	2014.11.12
18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2	37,155,732,173	297,245,850	7,047,806,177	56,382,440	240,863,410	2014.11.12
19	시흥시	정왕동 1366-9	8,850,719,372	70,805,740	4,033,300,431	32,266,400	38,539,340	2014.08.22
20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3 외	7,857,653,552	62,861,210	2,038,124,145	16,304,990	46,556,220	2014.10.21
21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	13,925,677,360	111,405,410	5,406,946,521	43,255,570	68,149,840	2014.10.22
22	용주시	관설동 1297-1 외	20,960,031,410	167,680,250	6,612,006,249	52,896,040	114,784,210	2014.10.27
23	용주시	단구동 702 외	10,107,852,443	80,862,810	8,585,817,439	68,686,530	12,176,280	2014.10.27
24	의정부시	의정부동 587	31,847,304,155	254,778,420	12,953,158,155	103,625,260	151,153,160	2014.11.12
25	광주시	실촌읍 근지리 343-9	6,326,076,230	50,608,600	5,293,022,171	42,344,170	8,264,430	2014.10.29
26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10	11,008,997,986	88,071,980	3,368,038,834	26,944,310	61,127,670	2014.10.29
2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4-7	2,148,734,809	17,189,870	233,502,000	1,868,010	15,321,860	2014.10.31
28	성적시	원덕읍 옥원리 112	1,119,462,392	8,955,690	1,010,721,957	8,085,770	889,920	2014.09.26
29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37-29	601,172,830	4,809,380	167,413,904	1,339,310	3,470,070	2014.11.10
30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9-1 외	4,047,925,920	32,383,400	1,597,840,800	12,782,720	19,600,680	2014.09.25
			938,148,395,494	7,505,186,940	437,253,496,489	3,498,027,840	4,007,159,1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별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 보조장 · 출납전표 · 결산서

■ 구 농어촌특별세법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또는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재판예규 제719호, 시행 1999. 5. 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접수)

② 상법 제299조의2· 제310조·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한다.

제4조(보고방법)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기재사항)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 또는 발기인(제310조)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4. 조사·감정의 목적
5. 조사·감정 사항
6. 공증인·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7. 작성연월일

8. 법원의 표시

제7조(심사)

② 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2.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③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끝)